

#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2
----------	-----

제출년월일 : 2013.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대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환경 관련 등 운영의 투명성제고 방안」 중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미 보급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안 제5조)

- 상수도 미 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20%)
-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제외자 범위

나.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조정 (안 제5조의2)

대상시설	현행	조정(안)
음용수(30톤 초과)	2년	3년
음용수(30톤 이하)	3년	5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6년

다. 국민권익 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납부방법의 편리성 확보(안 제18조)
  -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수납 가능
- 환급 및 환급 가산금 근거 규정 마련(안 제19조의2)
  - 「지방세 기본법」 제76조부터 제79조 준용
- 이의 신청 기간의 연장(안 제20조)
  -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연장 : 30일→90일
- 부담금 감면·면제 시 공개제 도입(안 제21조)
  - 지하수 이용부담금 500만원 이상 감면 시 홈페이지 공개

라. 체납액에 대한 증가산금 부과 기준 마련(안 제19조)

-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해당 상당하는 증가산금 부과

마. 옥내 배수의 누수로 인한 경감기준 마련(안 제21조2)

-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천원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4.1 ~ 4.22.) 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를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을 ““지하수개발·이용자”란”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에 따라”로,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량계”라 함은”을 ““유량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행보증금”이라 함은”을 ““이행보증금”이란”으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를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각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을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중모타펌프”를

“수중모터펌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로, “신고시”를 “신고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시 기타”를 “전시나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 확인 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 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26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위촉하는 자로 하되, 군소속”을 “위촉하는 자로 하되,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제7조제2항제4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군의회”를 “평창군의회”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를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타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를 “법 제30조의2에 따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2제4항제1호부터 8호

제15조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를 “법 제30조의3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를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납세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다.

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의 제목 “(가산금)”을 “(가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였을”로, “요금에 대하여”를 “요금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와 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9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총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

제20조제1항 중 “그 처분”을 “처분”으로, “3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을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

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을 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41조에 따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을 “과태료는 영 제44조 별표 7”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이상인”을 “둘 이상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부과하고자 하는”을 “부과하려는”으로, “서면에 의하여”를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의견진술이 없는”을 “의견진술이 없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을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6조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아니한”을 “아니하였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u>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u>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p> <p>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u>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u> 허가를 받거나</p>	<p><u>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시행에</u> ----- ----- -----.</p> <p>제2조(정의) ----- -----.</p> <p>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 ----- <u>제13조에 따라</u> ----- <u>법 제8조에 따라</u> ----- ----- ----- ----- -----.</p> <p>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 <u>제13조에 따라</u> - ----- <u>법 제8조에 따</u></p>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

라 -----  
----- 평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

3. “유량계”란 -----  
-----  
-----.

4. “이행보증금”이란 -----  
----- 법  
제14조에 따라 -----  
-----.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  
----- 각 호-----  
-----.

1. -----  
-----  
-----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

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1.·2. (생략)

<신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시행령」(이하

-----  
-----.

- 2. -----  
----- 수중모터 펌프-----  
-----.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  
----- 신고 시-----  
-----.

- 1.·2. (현행과 같음)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  
----- 각 호-----  
-----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신 설>

<신 설>

-----  
-----  
-----  
-----  
-----  
-----  
-----

1. ----- 제9조에 따라 -----  
-----  
-----  
-----
2. ----- 따라 -----  
-----  
-----
3. 전시나 그 밖에 -----  
-----  
-----  
-----

-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범위에서 지원한다.
-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지하수를 사



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제5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준수  
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하수수질기준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질

제5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 확인 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 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검사의 주기를 별표와 같이 한다.

<신 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 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 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  
-----  
--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  
-----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군 소속 공무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의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9명 -----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 호선(互選)한다.

② ----- 호의 어느 하나 ----- 위촉하는 자로 하되,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 .

1. 평창군의회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3. (생략)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③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④ (생략)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2.·3. (현행과 같음)

4. -----  
-----  
----- 제2조에 따른  
-----  
-----

③ -----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  
----- 평창군의회 -----  
-----  
----- .

제8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  
-----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

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  
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  
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 규정  
에 의거 관할 구역 안 지하수  
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  
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  
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으로 조성한다.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2제4항제1호 내지

----- 범위-----  
----- . <단서  
삭제>

제11조(비밀준수) -----  
--- 위원회의 -----  
----- .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  
치) ----- 법 제30조의2에 따  
라 -----  
-----  
-- 필요한 -----  
-----  
----- .

제14조(세입) ----- 법 제30  
조의2제2항에 따른 -----  
----- .

제15조(세출) -----  
각 호----- .

1. 법 제30조2제4항제1호부터 8

8호

-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  
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 3. 기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1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  
에 예산편성·결산 등 특별회계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①군수는 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  
지 제4호
-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  
지 제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호

- 2. 제5조에 따른 -----  
-----
- 3. 그 밖에 -----  
-----  
-----

제1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  
-----  
--- 운영에 -----  
-----.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① ----- 법 제30조  
의3에 따라 -----  
-----  
-----  
-----  
-----  
----- 제외한다.

-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  
터 제4호
-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  
터 제4호

② 제1항에 따른 -----

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물이용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신설>

제19조(가산금) 부담금 납부의무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납세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가산금 등) ① -----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아니하였을 -----  
----- 요금에 -----  
-----  
----- . 다만, 국가와 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신 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 4. (생략)

<신 설>

수할 수 있다.

제19조의2(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  
----- 처분 -----  
----- 90일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  
-----.

제21조(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

<신 설>

제22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  
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제21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  
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  
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  
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을 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  
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  
-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  
식-----  
----- 별지 제2호 서식  
-----  
----- 발급하여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라 함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

② 제1항에 따른 -----  
-----  
-----  
-----.

③ -----  
-----  
-----.  
-----  
-----  
-----  
----- 발급하여야 ----.

④ -----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른 -----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과태료는 영 제44조 별표 7-----  
----- 따른 다. ----- 둘 이상인 -----

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4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

-----.

제24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 부과 하려는 -----  
----- 서면으로 ---  
----- 사유 없이 ----- 의견 진술이 없을 -----  
-----.

② 제1항에도 -----  
-----  
-----  
-----  
-----  
-----

제25조(이의제기) ① -----  
-----  
-----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  
-----  
-----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

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  
-----.

제26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6조(강제징수) -----  
----- 제25조제1항에 따른  
-----  
----- 제22조제3항에 따른 ---  
-----  
아니하였을 -----  
----- 따라 -----  
-----.

제2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  
-----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  
-----.

제28조(준용)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44조 및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8조(준용) -----  
-----  
조례에서 -----  
-----  
-----.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 검사 수수료 총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한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환경과 환경과장 최찬웅
연락처	(033) 330 - 2340

# 관계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에서 그 수수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의 시기 및 절차,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②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  
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